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5월 10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천정배

◎ 법률 제7954호

不動産登記法 일부개정법률

不動産登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
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등기용
지는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납부하고”를 “납부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記名捺印하여야 한다.”를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
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 ①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
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
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준용한
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4(토지합필의 특례) ①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제16251호

관

부

2006. 5. 10. (수요일)

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제90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7조의8을 제177조의11로 하고, 제177조의8 내지 제177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77조의11(중전의 제177조의8)중 “登記事務處理등”을 “등기사무처리 및 제177조의8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과 제177조의9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정보”로 한다.

제1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①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대신할 수 있고, 전자

문서의 경우에 신청인·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77조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 “등기필정보”라 한다)의 통지로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②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7조의10(등기의 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81조제3항중 “그등기에대하여異議가있는趣旨를附記한후이를”을 “그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실을”로 한다.

제184조의 제목 “(處分前의假登記命令)”을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 등기의 명령)”으로 하고, 동조중 “假登記”를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로 한다.

제186조의3 및 제18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3(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①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등기관과 그 밖의 지방법원 및 동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6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6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등기부에 부실기록을 하도록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정(情)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자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①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예고등기
7. 파산
8. 경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당권 등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98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저당권에 따른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저당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부동산등기법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와 등기신청에 관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등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및 합필등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복등기의 정리(법 제15조의2 신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등기용지는 쓰지 못하도록 함.

나.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법 제57조의3 신설)

분양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분양자는 동시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다. 합필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90조의4 신설)

(1)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된 후 합필등기가 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합병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등 합필등기를 제한하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합병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법 제177조의8 내지 제177조의10 신설)

(1)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및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며, 등기

신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었을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 및 경매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저당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법제처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

국회 홈페이지 : WWW.assembly.go.kr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5월 10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천정배

●대통령령 제19467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①「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관련정보”라 한다)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 중지·이송 등 처분 결과
2. 공판진행사항 : 공판기일, 공소제기된 법원,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